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재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482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0. 16.

발 의 자 : 유재수 의원 외 8명

1. 개정이유

-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4에 따라 안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홍보를 강화하여,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 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 으로 함 (안 제4조)
- 헌혈장려 홍보 강화 (안 제7조)
-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(안 제8조 ~ 제15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1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6. 현행 조례 : 붙임4

7. 예산수반사항 : 붙임5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8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9. 기타사항 : 붙임6 (부서 검토의견서)

【붙임 1】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1항”을 “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”으로, “시민”을 “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제3조의 제목 “(시장의 책무)”를 “(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홍보 및 정보 제공)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
2.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
3. 그 밖에 시장이 홍보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매체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헌혈추진협의회)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산시헌혈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방안
2.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
3.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 대응
4. 자원봉사활동 등 및 지원
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과장으로 한다.

1. 교육(청)기관, 경찰서, 군부대, 의료기관, 민간경제단체(상공회의소 등을 말한다), 지역 언론기관,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·임직원
2. 시의회 의원
3.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
4. 보건의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운영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협의 · 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· 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준용)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안산시의회
임 안 자	시 의 원	유재수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2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현혈권장활동”이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현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	1. -----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----- -----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-----.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의 현혈정신을 고취하고 현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.
제4조(현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현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현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현혈장려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(현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보건복지부장관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관련정보의 제공) 시장은 현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7조(홍보 및 정보 제공) 시장은 현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현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
2.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
3. 그 밖에 시장이 홍보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매체

<신 설>

제8조(현혈추진협의회)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현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현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산시현 혈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현혈자원 확보 방안
2. 현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
3.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 대응
4. 자원봉사활동 등 및 지원
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
<신 설>

제9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이 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과장으로 한다.

1. 교육(청)기관, 경찰서, 군부대, 의료기관, 민간경제단체(상공회의소 등을 말한다), 지역 언론기관, 적십자협약원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·임직원

2. 시의회 의원

3.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

4. 보건의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<신 설>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<신 설>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

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12조(운영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제13조(협의 · 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· 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4조(준용)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 · 제9조 (생략)

제15조 · 제16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

안산시 현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482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0월 29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현혈 장려를 위해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함
- 협의회가 협의·조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

□ 주요골자

- 협의회 위원 구성에 “자원봉사센터” 추가 (안 제9조제3항제1호)
- “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”를 “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수정 (안 제13조)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제1호 중 “적십자혈액원 등” 을 “자원봉사센터, 적십자혈액원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13조 중 “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” 를 “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 설></u>	<p>제9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과장으로 한다.</p> <p>1. 교육(청)기관, 경찰서, 군부대, 의료기관, 민간경제단체(상공회의소 등을 말한다), 지역 언론기관, <u>적십자협액원 등</u>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·임직원</p> <p>2. 시의회 의원</p> <p>3.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</p> <p>4. 보건의료 지식과 경</p>	<p>제9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과장으로 한다.</p> <p>1. 교육(청)기관, 경찰서, 군부대, 의료기관, 민간경제단체(상공회의소 등을 말한다), 지역 언론기관, <u>자원봉사센터, 적십자협액원 등</u>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·임직원</p> <p>2. 시의회 의원</p> <p>3.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</p>

	<p>힘이 풍부한 사람</p> <p>5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/p>	<p>가</p> <p>4. 보건의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5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/p>
<u><신 설></u>	<p>제13조(협의 · 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· 조정한 사항을 <u>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3조(협의 · 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· 조정한 사항을 <u>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